

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2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중복·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여 후생복지 제도 현행화하고 퇴직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조항을 개선하여 후생복지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중복·사문화 조항 삭제(현행 제7조제1호, 제8호)
- 나. 정년·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근거 해소(안 제7조제5호)
- 다. 출산지원 조항 개선 및 확대 반영(안 제7조제9호, 제14호)
- 라. 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 조항 신설(안 제7조제16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
- 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- 다. 협의사항
 - (1) 창의규제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규제개선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
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5. 6. 05. ~ 6. 25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행정국 인력개발과 최유진 (☎ 2133-5780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2자녀 이상 출산한 소속공무원의 지원 등”을 “자녀출산 지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4호 중 “시술비”를 “시술비와 산전·산후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년·명예 퇴직공무원의 격려금 지급
16.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

제9조제4항 중 “위원회의 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담당과장”을 “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</u> 는 다음과 같다. 1. ~ 4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뜻은</u>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단, 제9호의 경우는 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 1. <u>우수 · 효행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 · 포상 · 문화유적지 시찰</u> 2. ~ 4. (생 략) 5. <u>정년 · 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</u> 6. · 7. (생 략) 8. <u>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</u> 9.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(설, 추석) 상품권 제공 및 <u>2자녀</u>	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 <u><삭 제></u> 2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순직공무원의 유가족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년 · 명예 퇴직공무원의 격려금 지급</u> 6. · 7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9. ----- ----- <u>자녀출</u>

<u>이상 출산한 소속공무원의 지원 등</u> 10. ~ 13. (생략) 14.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<u>시술비</u> 지원 15. (생략) <u><신설></u> 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 (생략) ④ <u>위원회의</u> <u>위원의</u>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. ⑤ (생략) 제11조(회의) ①·② (생략)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후생업무 <u>담당과장</u>이 맡는다. ④ ~ ⑥ (생략)	<u>산 지원</u> 10. ~ 13. (현행과 같음) 14. ----- ----- <u>시술비</u> <u>와 산전·산후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</u> ----- -- 15. (현행과 같음) 16. <u>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</u> 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위원</u>----- -----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 제11조(회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 <u>담당사무관</u>-----.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---	--

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『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』 제7조 9호, 14호, 16호

※ 기추진 중인 후행복지사업을 조례에 반영, 사업 근거 명확화

2. 비용추계의 전제

(출산지원 확대 운영)

- 첫째자녀에 대한 출산축하포인트 지급 : 1인당 포인트* × 지원인원**

* 지원금액 : 1인당 100만원, 둘째(200만원)·셋째(300만원) 지원금액과 균형 필요

** 지원인원 : 연 160명 (최근 5년간 서울시 직원의 첫째 자녀 출산 인원 중 연 최다인원으로 산정)

(산전·산후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)

- 산전·산후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횟수

· 임신·출산한 소속 공무원(현행 유지) : 1인당 5회

· 임신·출산한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(신규 제공) : 1인당 3회

- 1회 방문관리 단가 : 220천원(부가세 포함)

(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) ※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'20년부터 추진중

- 행정종합배상공제 연간 정기등록분 : 1인당 보험료* × 총정원수**

*2025년 기준 1인당 보험료 : 18,456원

**2025년 기준 총정원수 : 12,971명(서울시 소속 전직원(공공안전관, 공무원, 축탁직 포함, 소방직 제외))

- 1인당 보험료와 총정원수는 매년 변동되며, 매년 7월 기준 총정원수를 파악하여 차기 예산 편성

- 최근 3년간 납부액 평균 상승률(3.7%)을 반영하여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○ 첫째 출산지원	160,000	160,000	160,000	160,000	160,000	800,000
	○ 산전·산후서비스	113,520	113,520	113,520	113,520	113,520	567,600
	○ 공제보험료 납부	264,000	273,768	283,897	294,402	305,294	1,421,361
	소계(a)	537,520	547,288	557,417	567,922	578,814	2,788,961
수입	소계(b)	해당 없음					
□ 총 비용(a-b)		537,520	547,288	557,417	567,922	578,814	2,788,961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						
국비							
시비	지방세수입	537,520	547,288	557,417	567,922	578,814	2,788,961
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 등						
민간							
기타							
합계		537,520	547,288	557,417	567,922	578,814	2,788,961

5. 덧붙이는 의견

- 해당없음

6. 작성자 : 인력개발과 이소영(02-2133-5773), 유초롱(5785), 강민형(5772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출산지원 확대 운영)

- 최근 5년간 서울시 직원의 첫째 출산인원 중 연 최다인원으로 산정('22년, 약 160명)

(산전·산후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)

※ 산출식 : 예상 이용인원 × 인당 평균 이용 건수 × 1회 서비스 비용

1) 소속 공무원 서비스 비용('24년 서비스 이용 현황 반영)

- 97명 × 3.6회 × 220천원 = 76,780천원

2) 공무원의 배우자 서비스 비용('23년 출산현황 및 '24년 서비스 이용실적으로 추계)

- 76명* × 2.2회** × 220천원 = 36,740천원

* '23년 남성직원 출산인원(123명) × 서비스 이용률(62%)

** 1인당 최대 서비스 제공횟수(3회) × 평균 이용률(72%)

3) 산전·산후 방문관리 서비스 비용 총계

- 76,780천원(소속 공무원 대상) + 36,740천원(공무원의 배우자 대상)

= 113,520천원

(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)

- 2025년도 행정종합배상공제 예산계상액 안내(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-2458(2024.8.8.)) 첨부 자료 참고